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그건_연기가_아니라_성폭력입니다
남배우A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대법원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_ 2018년 9월 13일(목) 오후 4시 30분
- 장소 _ 대법원 정문 앞
- 주최 _ 남배우A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사회_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1_ (이학주_피해자 변호사, 법무법인 참진) -2p

발언2_ (윤정주_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4p

발언3_ (배복주_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장애여성공감 대표)

발언4_ (안병호_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6p

발언5_ (남순아_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7p

발언6_ 피해자 입장문 -8p

남배우A 성폭력사건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학주(피해자 변호사, 법무법인 참진)

1. 여배우A에 대한 강제추행사건의 판결의 경과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발생한 영화배우 조덕제의 여배우에 대한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한 사건에서 1심은 피고인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 조덕제의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조덕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검사는 강제추행치상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는 바, 대법원은 피고인 조덕제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 조덕제의 강제추행죄 및 무고죄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의 의미

오늘 대법원은 피고인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하여 영화배우 조덕제의 무고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신체의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촬영 과정이라 하더라도 연기를 하는 행위와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고, 연기나 촬영 중에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영화촬영과정에서 여성의 가슴과 음모를 만지는 행위는 감독의 ‘연기지시’나 이에 따른 피고인의 ‘연기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전에 공유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는 이상 그 것을 단지 정당한 ‘연기였다’라고만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연기행위를 벗어나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연기를 빌미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모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함으로써 피해

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피해자를 무고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라고 판시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화 촬영현장에서 연기내용에 대해 여성 연기자와 사전에 공유하거나 승낙을 받지 않고 여성 연기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은 그것이 연기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화촬영현장에서도 여성의 성적자기 결정권은 보호되어야 함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고, 영화나 연기예술분야에서 ‘정당한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추행’과의 구별기준으로 여성 연기자와의 “사전 협의”나 “승낙”을 얻을 것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졌던 문화예술계 내의 잦은 성폭력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고 있고, 2016년 SNS를 통한 해시태그 운동과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는 미투운동 등으로 폭로된 문화예술계 내의 성폭력 등과 관련해 이번 판결이 문화예술계 내의 성폭력에 대해 그 기준점을 제시하고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이 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이후에는,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연기나 관행, 예술행위라는 미명하에 여성 연기자의 “사전동의”나 “승낙”없이 행해진 성폭력 행위들은 근절되어야 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여성 연기자의 의사 존중, 연기내용에 대한 명백한 사전 동의, 노출 연기에 대한 계약서 작성 등 문화예술인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문화예술계 내의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무법인 참진

전화: (02) 597-0307 팩스: (02) 586-2797

남배우A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경과 보고 및 이후계획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 [기자회견]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일시 : 2017년 3월 8일 오전 10시

-공동주최 : 남배우A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여성영화인모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짝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여성문화예술연합, 장애여성공감, 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공동성명>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그대들의 노동은 안전하십니까? 발표

- 일시 : 2017년 5월 11일

- 남배우A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여성영화인모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짝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학내 페미니즘 동아리, 영화계 단위 등 총 88개 단위 연명

○ <환영 논평>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환영 한다 발표

- 일시 : 2017년 10월 13일

- 남배우A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여성영화인모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짝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10월 24일(화) 오전 11시

- 공동주최 : 남배우A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여성영화인모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짝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장애여성공감, 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긴급토론회] 남배우A성폭력사건 언론보도 행태 "디스패치에 따르면" 고발한다 개최

- 일시 : 2017년 10월 27일 오후 14:30

- 공동주최 : 남배우A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여성영화인모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항소심 재판부 및 대법원 재판부에 관련 사건에 대한 공대위 의견서 제출**

***항소심 재판 동행 지원**

***대법원 판결문 분석, 영화계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온 피해자 대응과정 및 공대위 활동의 의미와 성과, 한계 등을 나누는 자리를 기획예정**

영화를 만드는 곳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좋은 현장이 되는 것 이제 시작입니다.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영화를 만드는 현장은 오랫동안의 관행으로 영화를 위해서 당연히 희생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편의 영화를 위해서 밤을 세우고 끼니를 거르는 일이 어쩔 수 없이 생각했고 자연스런 장명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 되었습니다.

영화를 만들어 온지 100년이 다 되어서야 영화현장의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기 시작했고 장시간 촬영을 이어가는 것은 비상식적인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현장은 모두에게 안전하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배우A사건을 통해 우리의 현장이 여전함을 새삼알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위해선 감내하고 희생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상대배우와의 소통보다 더 그럴싸한 화면에 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은 영화만 생각해선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배우를 배려하고 소통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영화현장의 또 다른 변화, 그렇지만 반드시 지켜져야 했어야 할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 영화를 보는 관객들과 영화를 만드는 현장의 모든 동료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면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화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누구든 영화에 가려지지 않길 바랍니다. 영화계 내 성폭력이 사라지고 모두에게 안전한 현장은 결국 우리에게 의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화도 동료를 착취하면서까지 만들 가치가 없다는 것을,
관객들 역시 그러한 영화는 외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순아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먼저 이 싸움에서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료와 후배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낸 피해자와 피해자의 곁에서 함께 싸운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자연스러운 연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배우를 합의되지 않은 폭력에 노출시키는 것은 오랫동안 배우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해진 폭력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여성 배우들은 그간 한국영화의 서사나 캐릭터를 풀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더욱 더 그런 폭력에 쉽게, 많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할 경우 '프로답지 못하다'거나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으며, '함께 작업하기 불편한', 꺼려지는 배우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영화에 큰 돈과 시간, 다른 스태프들의 커리어와 생계가 걸려있다면 아무렇지 않게 그 상황을 넘길 것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이 폭력의 방식은 하나의 연출론과 연기론이 되어, 은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통용되곤 했습니다. 문제제기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던 영화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감동 받았던 영화가, 그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누군가를 착취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알고도 그 영화를 좋아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이들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화만 잘나오면 돼'라는 말로 자신을 비롯한 동료들을 존중하지 않던 관행은 여전히 계속 되어도 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점점 더 많은 관객과 영화인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영화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배우들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 노출시킴으로써 나오는 반응을 '진정성'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는 것은 구시대의 잘못된 관습입니다. 배우를 도구화하지 않고, 전문 연기자로 존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영화도 동료를 착취하면서까지 만들 가치는 없다는 것을, 관객들 역시 그러한 영화는 외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화계 구성원으로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판결이 각자의 자리에서 영화계 내 성폭력과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가닿길 바랍니다.

피해자 입장문

- 40개월, 법적 싸움, 그리고 이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배우’로 불리던 ‘조덕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반민정입니다. 조덕제는 ‘강제추행’과 ‘무고’의 죄로 지금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1. 40개월의 싸움, 그리고 현재

저는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웠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해 이후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정으로 40개월 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수에 올랐다’라는 이유로 ‘굳이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되어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습니다. 건강도, 삶의 의욕도 모두 잃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법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자신을 언론에 공개하며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인인 이재포 등을 동원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조덕제는 1심에서 성공했던 ‘언론을 이용한 2차가해’를 항소심 이후에도 지속하며 대중들이 저에 대해 편견을 갖게 했고, 이것은 악플 등 추가가해로 이어져 삶을 유지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조덕제가 저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입니다.

2015년 4월 조덕제의 강제추행, 그리고 2016년 7, 8월 조덕제의 지인 이재포, 김모씨가 만든 <가짜뉴스>들. 성폭력 가해자인 조덕제와 그 지인들이 합심하여 한 인간의 삶을 짓밟은 이 상황에서 그 사건의 기억을 도려내서 없었던 일로 일로 한다면 모를까, 저는 그 기억을 꺼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지금도 저는 그들에게 또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도 두렵습니다.

2. 신상공개 및 발언의 이유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이를 피해자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경우 그것이 비록 언론이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정보를 외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사법시스템’을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했고, 제가 당한 성폭력 피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덕제가 항소심 유죄선고 후 자신을 드러내면서 조덕제 본인, 가족, 지인, 나아가 인터넷카페 회원들 및 특정 언론사에 의해 제 정보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다 조덕제가 SNS를 이용해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인신공격을 하고, 특정 언론사들이 조덕제의 발언을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기사로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덕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밟고 있었고, 일부 언론이 이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습니다. 저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죽고 싶은 날도 많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확신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로 40개월을 버텼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아낸 40개월이,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저는 이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릅니다.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부디 제 사건의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왔던 영화계 내의 성폭력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배우로서 동료, 선배들과 함께 현재보다 더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연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 제자들이 영화계로 진출할 때쯤엔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영화계의 관행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연기를 사랑합니다. 40개월의 싸움을 하며 연기에 대해 회의를 느낄 때도 있었지만, 무대에 서고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진짜 살아있다고 느끼는, 천상 배우입니다. 이렇

계 연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영화계가, 연극계가 악몽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3. 이 사건 재판의 진행

(1) 1심

1심 재판부는 2016년 7월 안에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알 수 없는 사유로 선고를 미루다 그해 12월에 이르러서야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조덕제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 즉 ‘연기’라는 것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5년인데 왜 <무죄> 선고가 나왔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법시스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저는 1심이 끝난 뒤에야 공판기록을 모으고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심의 선고가 지연된 그때, 조덕제가 지인인 이재포, 김모씨를 동원해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가짜뉴스>를 만들었고, 그 관련 자료를 모두 1심 공판에 지속적으로 내면서 저를 ‘허위.과장의 진술습벽이 있는 여자’로 몰아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언론을 이용한 ‘물타기’를 한 것입니다.

(2) 2심

그 충격을 딛고 저는 항소심에 임했고, 저에 대한 조덕제측의 의혹이 모두 허위임을 밝혔으며, 영화계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제가 입은 성폭력 피해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 2017년 10월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조덕제의 행위’는 ‘업무상 행위’가 아니며,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연기 및 촬영 현장에서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리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4. 조덕제와 이재포의 2차가해와 그 대응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 저는 조덕제의 지인인 이재포와 그 매니저 출신인 김모씨가 참여한 <가짜뉴스>의 형사재판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조덕제가 제공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이재포와 김모씨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기사의 원 작성자를 숨기는 방법까지 쓰면서 2016년 7,8월에 걸쳐 <가짜뉴스>를 만들었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다시 조덕제에게 전달해 조덕제가 그것을 성폭력 사건 1심부터 3심

까지 활용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보험사기로 진정하고,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는 조덕제측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는 등 철저히 조덕제의 성폭력 사건의 ‘물타기’를 위해 언론을 악용하는 2차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지면서 이재포와 김모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재포는 죄질이 나빠 법정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조덕제와 그 지인들이 언론을 이용해 저지른 2차가해로 인해 저는 ‘협박녀, 갈취녀, 사칭녀, 사기녀’ 등으로 불리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각 사이트와 블로그, SNS 등에는 그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워도 지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언론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런 2차가해가 한 인간의 삶을 얼마나 짓밟는 것인지 더 알릴 겁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들에 대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5. 마지막

오늘의 판결은 저 혼자만의 싸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많은 이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교수님과 선후배님들, 학생들, 영화계 동료들, 공대위 여러분들, 검사님, 변호사님, 판사님, 그리고 마녀님. 그러니 이제 제가 자신을 밝히고, 남아 있는 다른 법적 싸움을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없어져야 합니다.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물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